의 결 번 호	제 2018 - 3호
의 결 연 월 일	2018. 4. 27. (제 2 회)

의결사항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

-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개 관련 지침 개정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출 자	위원장 박 능 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18. 4. 27.

1. 의결주문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과 이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25조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와 관련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및 투자내역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 투자정책, 의결권행사,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회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 (국회 상임위 요구 시 의사록 제출)

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관련 세부 반대사유 공개

○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반대결정 시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공개(반대사유 구체화)토록 하여 누구나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다. 투자 및 자산내역 공개 확대

○ 국내·해외주식 전 종목

○ 국내채권 발행기관별 투자 현황

○ 해외채권 전 종목

○ 대체투자 관련 각종 통계치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

-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개 관련 -

2018. 4. 2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Ⅱ. 정보공개 현황 ·····

Ⅲ. 정보공개 개선방안 ·····

Ⅳ. 향후계획 ·····

Ⅴ.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자료]

1. 투자종목 정보공개 확대 적용례
2. 기금운용 정보공시 관련 규정
3.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회의록·의사록·안건 공개 현황
4. 국내 타위원회 운영사례
5. 자산군별 세부 투자내역
6. 대체투자 통계치(안)

[별지]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국민연금기금 규모 성장('17년말 기준, 621.7조원)에 따라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투자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행사 논란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대**되었음

□ 따라서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시 강화 등 **정보공개를 개선**할 필요

○ 또한,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법 개정을 통한 정보공개 개선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지침개정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추진

2. 추진 경과

□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사례조사**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단 내 TF 구성·운영**('17.하)

* (국정과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시 강화

○ 해외 연기금의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내역 등 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공개 가능범위 및 쟁점 사항 검토

□ 복지부-공단 간 협의를 통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확대, 투자내역 공시강화**를 위한 **추진방안** 및 관련 **지침 개정안** 마련(~'18.3월)

Ⅱ 정보공개 현황

1 국민연금기금

1. 의사결정과정

□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 후 회의록*** **공개**

* 회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

- **기금운용 업무** 및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4년 경과 후 공개**

* 국회 소관 상임위 요구 시 비공개로 제출

○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은 차기회의 보고 후 **1개월 이내** 공개

□ **전문위원회(의결권행사, 투자정책, 성과평가보상)**
(기금운용위원회 운용규정 및 각 위원회 운영세칙)

○ 자문기구 성격상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회의록 비공개** (주요내용 중심으로 회의결과 작성·보관)

○ 다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위원 3인 이상 요구 시 상정된 부의안건 결정시)**을 작성·보관**토록 기금위 의결('18.3.16)

* 소관 상임위 요구 시 회의록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

※ **투자위원회** 등 공단 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개별투자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경영상 비밀**에 해당, 공개 시 기금운용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존재하여 **회의록 비공개**
(단, 상장주식 의결권행사 관련 찬·반여부와 반대 사유는 주총 후 14일 이내 간단히 공개)

2. 투자 및 자산내역

□ 전체 현황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25조, 기금운용규정 제39조)

○ 연간, 분기, 월간, 수시 공시 사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투자종목**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공개시점에서 **6개월 이전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 공시 대상 정보 및 시기 >

구분	공시 대상	공시시기
월간공시	■ 수입·지출·적립 현황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수익률	월말 기준 60일 이내
분기공시	■ 주식 대량보유 내역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율 5% 이상 보유 종목」) ■ 채권 종류별 운용 현황 ■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분기말 기준 60일 이내
연간공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내역 - 주식 섹터별 운용 현황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운용 현황 - 해외투자 지역별 운용 현황 - 증권위탁 펀드별 운용 현황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내역** - **주식 투자종목별 현황(단, 국내주식의 경우 지분율 5% 이상 종목)** - **채권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현황** - **대체투자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현황** ■ 책임투자 관련 현황(정책, 기준, 운용규모, 투자현황 등)	연도말 기준 90일 이내 다만 자산군별 세부내역은 기금위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의결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시공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규정과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발생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다만 기금위가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안건을 의결한 날로부터 40일 이내

□ 자산군별 투자종목 등 세부내역

○ 주식투자

-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보유 종목** 공개 ('17년말 기준 국민연금 투자 799종목 중 284종목, 투자 비중의 92.7%)

- **(해외주식) 전 종목** 공개

○ **(채권·대체투자)**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 공개

○ **(위탁운용사, 거래기관 현황)** 매분기 **주식·채권 위탁펀드별 위탁운용 규모** 및 **위탁운용사**,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거래증권사 등 공개

2 해외 주요연기금

1. 의사결정과정

□ 위원회 형태, 구성, 운영방식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 공개 범위·수준도 차이**가 있음

<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공개 현황 >

기관	국민연금	CalPERS(미국)	GPIF(일본)	CPPIB(캐나다)
명칭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위원회	운용위원회	이사회
역할	투자정책, 기금운용지침, 자산배분 등	투자철학, 투자정책, 자산배분 등	중기계획, 법인관리 등	투자정책, 운영전반 등
정보공개	회의록, 의사록(주요내용 요약) 및 안건 공개 (일부 비공개)	공개세션/비공개세션[1]으로 구분하여 공개세션에 한해 회의영상, 안건 및 결과(요약) 공개	회의록 요약 공개, 회의록 전문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년 후 반기별 공개(연2회)	회의안건 및 회의록 비공개 (다만, 연차보고서에 주요 의사결정 내용 요약 공개)

1) 공개세션(퇴직연금, 학교기금 등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 등) /
비공개세션(보유주식의 주주권행사 관련해 투자한 법인 이사선출, 기업의 순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 부동산 개별투자 건에 대한 의사결정 등)

2. 투자 및 자산내역

□ 각 연기금에 따라 **공개범위·방식이 다양**

○ **(주식·채권) 전 종목** 또는 **일부 종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

- 다만, 자국시장 내 투자비중 등 시장 영향력 차이 고려 필요
(예시. 자국 주식시장 점유율 비교 ; CPPIB(캐나다) 0.5% 이내 vs. 국민연금 약 7%)

< 주식·채권 투자내역 공개 현황 >

기관	국민연금	CalPERS(미국)	GPIF(일본)	CPPIB(캐나다)	ABP[1](네덜란드)
자산군	**국내주식** : 지분율 5% 이상 **해외주식** : 전 종목 **채권** : 상위 10개 종목	전 종목	전 종목	시가 1백만불 (CAD) 이상	주식 : 전 종목 자산군 통합 : 상위 100개
주기	매년 (주식 대량보유내역 매분기)	매년	매년	매년	매년
시차	6개월 (주식 대량보유내역 1개월)	약 6개월	최신	최신	주식: 약 3개월 채권: 약 6개월
비고 (자국시장 내 투자비중)	7.0%	0.3%	5.7%	0.4%	0.6%

1) ABP는 주식 전 종목 및 주식/부동산/채권 자산군 통합 기준 상위 100개 기관(종목)만 공시

○ **(대체투자)** 부동산, 사모 등 투자자산 일부 또는 전체의 투자처, 금액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경향

< 대체투자 내역 공개 현황 >

기관	국민연금	CalPERS(미국)	GPIF(일본)	CPPIB(캐나다)	ABP(네덜란드)
공개내용	상위 10종목	전 종목[1] (부동산, 사모 등)	비공개[2]	전 종목[1] (부동산, 사모 등)	자산군 통합 상위 100개
주기	매년	매년	-	매년	매년
시차	6개월	약 6개월	-	최신	약 6개월

1) 제3자 비밀유지 조항 있는 경우는 제외

2) GPIF는 2014년 인프라 투자, 2016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으나 아직 공시되지 않음

Ⅲ 정보공개 개선방안

1 추진방향

□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자산내역을 **해외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개 확대**

* 다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제3자 비밀보장 등 계약 사항, 개별 투자의사결정 관련 사항, 투자전략 노출이 우려되는 사항 등)

□ 국민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보전달 방식 개선**

2 개선방안

1. 의사결정과정 공개

□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3개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투자정책, 의결권행사,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 회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국회 상임위 요구 시 의사록 제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4장 전문위원회 <신설>	**제4장 전문위원회** **제21조의2(회의록 작성·비치)** ①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관련 세부 반대사유 공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별표4)」 개정)

○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국내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반대결정 시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공개**(반대사유 구체화)하여 누구나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반대사유 구체화(안) 예시 >

현행			개선(안)
이사선임 관련	○○○ : 과도한 겸임 (세부기준 제27조)	⇨	○○○후보는 과도한 겸임에 따른 이사의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세부기준 제27조)
사외이사 선임관련	○○○ : 출석률 저조 (세부기준 제28조)		○○○후보는 직전임기 이사회 출석률이 75% 미만으로 반대 (세부기준 제28조)
	○○○ : 이해관계로 독립성 취약우려 (세부기준 제28조)		○○○후보는 최근 5년 이내 당해회사 상근임직원으로 재직하여 독립성 취약이 우려되어 반대 (세부기준 제28조)
정관변경 관련	(퇴직금 지급관련) 주주가치 훼손우려 (세부기준 제6조)		정관변경 내용 중 이사회로부터 퇴직금 지급 관련 결정을 위임받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아 사외이사가 배제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퇴직금 규모 등을 정하는 등 우려가 있어 반대 (세부기준 제6조)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세부기준 제17의2조)		이사회의 소집통지 기간 단축은 이사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대 (세부기준 제17의2조)

2. 투자 및 자산내역 공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별표4)」 개정)

□ **(주식·채권)** 원칙적으로 **전 종목 공개** 등 공개 범위 확대

○ 다만, **국내채권**의 경우 시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발행기관별 공개** ('17년 말 채권발행 잔액의 13% 수준)

* 국내채권의 경우 개별 투자내역을 공개할 경우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운용전략, 매매패턴 등 추정 및 활용에 따른 가격 왜곡, 원활한 운용 장애 등 우려

< 현행·개선안 비교 >

구분	현행	개선(안)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전 종목**
해외주식	전 종목	좌동
국내채권*	상위 10종목	**발행기관별 투자금액**
해외채권	상위 10종목	**전 종목**

□ **(대체투자)** 대체투자 관련 다양한 **통계치 제공**

* 제3자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세부사항 공개 어려움

< 대체투자 공시 통계치 예시 >

구분	공개 내역
총괄	국민연금 국내/해외 유형별 대체투자 규모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 수, 약정금액, 집행금액, 투자잔액 등
위탁비중	유형별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
지역별 투자현황	지역별 투자금액 및 비중
통화별 투자현황	해외대체자산 통화별 투자금액 및 비중
헤지펀드	투자전략별 비중, 운용사별 투자현황

□ **(정보전달 방식 개선)** 기금운용 홈페이지 개편 추진

○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투자의사결정 및 자산내역 관련 **기금운용 공시 관련 홈페이지 개편**하여 정보전달 방법 개선

* (예시) (현행) 기금위 안건을 차수별 공개(파일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안건내용 파악 어려움) → (개선) 안건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기금운용 의사결정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

○ 또한, 공시정보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도 강화**

< 공시대상 정보 관련「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별표 4)」개정안 >

구분	공시 대상(현행)
월간 공시	▪ 수입·지출·적립 현황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

구분	개편(안)
월간 공시	좌동

구분	공시 대상(현행)
분기 공시	▪ 주식 대량보유 내역 ▪ 채권 종류별 운용 현황 ▪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연간 공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 내역 - 주식 섹터별 운용 현황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운용 현황 - 해외투자 지역별 운용 현황 - 증권위탁 펀드별 운용 현황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 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단, 국내주식의 경우 지분율 5% 이상 종목) - 채권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투자 현황 - 대체투자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투자 현황
수시 공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규정과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구분	개편(안)
분기 공시	좌동
연간 공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 내역 - 주식 섹터별 운용 현황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운용 현황 - 해외투자 지역별 운용 현황 - 증권위탁 펀드별 운용 현황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 **국내·해외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 - **국내채권 발행기관별 투자 현황** - **해외채권 종목별 투자 현황** - 대체투자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투자 현황 및 **대체투자 관련 통계치**
수시 공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규정과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Ⅳ 향후계획

□ **('18.6월) 기금운용 공시 관련 홈페이지 개편 및 기금운용 관련 정보 확대 공개**

○ **정보 재구성, 기능 보완**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개편

○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 공시 확대 시행**

V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심의**

○ 대부분 위원들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투자내역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함

□ 기타의견

○ 국내주식, 채권 전 종목 공개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투자내역 공개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전 종목 공개가 시장이나 운용담당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단계적 공개 의견**도 제시

* (예시) 국내주식 경우 1단계 지분율 3% 이상, 2단계 1% 이상, 3단계 전 종목

○ **대체투자**가 일반적인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도록 검토할 필요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반대결정**시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모색 필요

- 반면,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제한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시장에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영향을 주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

붙임 1 **투자종목 정보공개 확대 적용례**

<table>
<tr><th>구분</th><th>이전</th><th>개편 적용례</th></tr>
<tr><td>국내
주식</td><td>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이상 종목 공개
(단위: 억원, %)
<table><tr><th>No.</th><th>종목명</th><th>평가액</th><th>비중</th><th>지분율</th></tr><tr><td>1</td><td>LG하우시스</td><td>1,163</td><td>0.1</td><td>13.6</td></tr><tr><td>2</td><td>삼양홀딩스</td><td>1,382</td><td>0.1</td><td>13.5</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276</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매년 <u>국내주식 전종목 공개</u>
(단위: 억원, %)
<table><tr><th>No.</th><th>종목명</th><th>평가액(억원)</th><th>비중</th><th>지분율</th></tr><tr><td>1</td><td>LG하우시스</td><td>1,163</td><td>0.1</td><td>13.6</td></tr><tr><td>2</td><td>삼양홀딩스</td><td>1,382</td><td>0.1</td><td>13.5</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774</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해외
주식</td><td>매년 해외주식 전종목 공개</td><td><u>좌동</u></td></tr>
<tr><td>국내
채권</td><td>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 공개
(단위: 조원, %)
<table><tr><th>No.</th><th>종목</th><th>금액</th><th>비중</th><th>종류</th></tr><tr><td>1</td><td>국고05750-1809</td><td>8.72</td><td>3.31</td><td>국채</td></tr><tr><td>2</td><td>국고05000-2006</td><td>5.76</td><td>2.19</td><td>국채</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10</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매년 <u>발행기관별 투자금액</u>
(단위: 조원, %)
<table><tr><th>No.</th><th>종목</th><th>금액</th><th>비중</th></tr><tr><td>1</td><td>국고채권</td><td>111.7</td><td>39.04</td></tr><tr><td>2</td><td>한국주택금융공사</td><td>21.5</td><td>7.50</td></tr><tr><td>3</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442</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해외
채권</td><td>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 공개
(단위: 조원, %)
<table><tr><th>No.</th><th>종목</th><th>금액</th><th>비중</th><th>비고</th></tr><tr><td>1</td><td>JAPAN 3% 20/SEP/2018</td><td>0.2</td><td>1.0</td><td>Treasury</td></tr><tr><td>2</td><td></td><td></td><td></td><td></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10</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매년 <u>해외채권 전종목 공개</u>
(단위: 조원, %)
<table><tr><th>No.</th><th>종목</th><th>금액</th><th>비중</th><th>비고</th></tr><tr><td>1</td><td>UST 1.329 01/31/19 FRN</td><td>0.2</td><td>0.8</td><td>Treasury</td></tr><tr><td>2</td><td></td><td></td><td></td><td></td></tr><tr><td>3</td><td>…</td><td>…</td><td>…</td><td>…</td></tr><tr><td>4</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r><td>4270</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대체
투자</td><td>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 공개
1) 국내대체</td><td>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내역 공개 및 <u>대체투자 관련 통계치 제공</u>

<u><좌동></u></td></tr>
</table>

구분	이전	개편 적용례
	(단위: 십억원) No. | 종목 | 금액 | 투자처 1 | 인프라1 | 1,842 | 도로 2 | 인프라2 | 1,039 | 도로 3 | … | … | … 4 | … | … | … ⋮ | … | … | … 10 | … | … | … 2) 해외대체 (단위: 십억원) No. | 종목 | 금액 | 투자처 1 | 프로젝트형 인프라1 | 1,343 | 유틸리티 2 | 프로젝트형 부동산1 | 1,039 | 상업용 부동산 3 | … | … | … 4 | … | … | … ⋮ | … | … | … 10 | … | … | …	**<대체투자 통계치(안)> 추가** Ⅰ. 국내대체 1. 국내대체 포트폴리오 현황 총괄 - 국내대체 투자금액 - 국내대체 포트폴리오 구성 - 국내대체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 2. 국내대체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 국내부동산 약정 및 투자현황 - 국내인프라 투자현황 - 기타대체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Ⅱ. 해외대체 1. 해외대체 포트폴리오 현황 총괄 - 해외대체 투자금액 - 해외대체 포트폴리오 구성 - 해외대체 지역별 투자현황 - 해외대체 통화별 투자현황 - 해외대체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 2. 해외대체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 해외부동산 투자현황 - 해외부동산 전략별 투자현황 - 해외부동산 지역별 투자현황 - 해외인프라 투자현황 - 해외인프라 전략별 투자현황 - 해외인프라 지역별 투자현황 - 해외사모 투자현황 - 해외사모 전략별 투자현황 - 해외사모 지역별 투자현황 - 헤지펀드 투자전략별 비중 - 헤지펀드 운용사별 투자현황

붙임 2 기금운용 정보공시 관련 규정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①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금운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별표 4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종목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6개월 이전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39조(공시)

①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에 관한 공시는 영 제87조를 따른다. ② 공단은 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정보를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1. 월간공시 : 월말기준으로 60일 이내
2. 분기공시 : 분기말 기준으로 60일 이내. 다만, 주식대량보유내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름
3. 연간공시 : 연도말 기준으로 90일 이내. 다만 자산군별 세부 내역은 기금위 의결한 날로부터 40일 이내
4. 수시공시 : 발생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다만 기금위가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안건을 의결한 날로부터 40일 이내

[별표 4] 공시 대상 정보(기금운용지침 제25조 제항 관련)

구분	공시 대상
월간공시	- 조성・지출・적립 현황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분기공시	- 주식 대량보유 내역 - 채권 종류별 운용 현황 -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연간공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 내역 ・ 주식 섹터별 운용 현황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운용 현황 ・ 해외투자 지역별 운용 현황 ・ 증권위탁 펀드별 운용 현황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 주식 투자종목별 현황(단, 국내주식의 경우 지분율 5%이상 종목) ・ 채권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현황 ・ 대체투자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현황 - 책임투자 관련 현황 ・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계획, 조직 및 활동내역

구분	공시 대상
	·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기준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위탁·직접 구분) 및 운용규모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 현황(공시대상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중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종목별 현황) ·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현황, 성과평가 기준
수시공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규정과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붙임 3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회의록·의사록·안건 공개 현황

구분		회의록	의사록	안건
개 념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한 자료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자료	회의에 부의한 안건의 세부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	공개여부	공개대상으로 명시	공개 대상으로 명시	공개대상으로 명시
	공개방법	보건복지부/공단 홈페이지 게시	보건복지부/공단 홈페이지 게시	×
	공개시기	회의의 개최 일부터 1년 이내 * (단서)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는 4년 이내	차기회의에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	×
	근거규정	법 제103조의2(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회의록의 공개·작성·비치)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회의록의 공개·작성·비치)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안건의 공개 등)
	공개현황	1년 후 복지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단서에 해당하는 안건은 4년 후 공개	차기회의 보고 후 1개월 이내 복지부/공단 홈페이지 게시	복지부/공단 홈페이지 게시 (회의자료)
	특이사항	국회 소관 상임위 요구 시 비공개로 제출	-	-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 위원회	공개여부	기금운용위원회 준용	기금운용위원회 준용	공개대상 아님을 명시
	공개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
	공개시기	회의의 개최 일부터 1년 이내 * (단서)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는 4년 이내	차기회의에 보고 후 1개월 내에 공개	×
	근거규정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준용규정) *제7조 내지 14조 준용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준용규정) *제7조 내지 14조 준용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안건의 공개 등)
	공개현황	-	복지부/공단 홈페이지 게시	×
전문 위원회	공개여부	×	×	공개대상 아님을 명시
	공개방법	×	×	×
	공개시기	×	×	×
	근거규정	×	×	제25조(안건의 공개 등)
	공개현황	×	×	×

붙임 4

국내 타위원회 운영사례

위원회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군인복지·연금기금운용심의회	금융통화위원회	한국투자공사운영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75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4, 사학연금공단 정관	군인복지·연금기금운용심의회 예규	한국은행법 제24조, 시행령 12조, 금융통화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11조 및 제12조	한국투자공사법 제10조, 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	금융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및 제8조
작성내용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	-	-	·속기록: 회의일시, 장소,발언자, 발언내용 ·의사록: 개회, 정회 및 폐회 일시, 회의장소, 출석결석위원, 참여자의 성명, 안건 제목 및 처리 결과, 반대의사 위원의 성명 등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회의장소, 출석결석위원, 참여자의 성명, 회의경과의 요지 그 결과	회의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회의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내용	회의록 전문 공개	-	회의개요 및 논의결과 (요지)	결산 및 자산운용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권고)	·속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한 의사록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공개 ·금융시장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 필요한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비공개 (투자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속기록을 근거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 공개
공개시점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기금운용 업무 및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최일부터 4년 후 공개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운법 제11조(경영공시) 및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준용	-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은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 ·금융시장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 필요한 경우는 공개시기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익명으로 처리된 금통위 의사록 전문: 개최 후 4년 후 공개	-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 ·금융시장의 안정 우려 및 제재를 위한 합의과정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특이사항	전차회의록 요약본 공개 (차기회의 보고 후 1개월 이내)	-	-	-	의사록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만 일부 공개	공개여부에 관한 규정 없음	-

붙임 5 **자산군별 세부 투자내역(2017.6.30.기준)**

1) 국내주식

No.	종목명	평가액(억원)	비중(%)	지분율(%)
1	삼성전자	299,341	12.24	9.64
2	SK하이닉스	49,342	2.02	10.06
3	NAVER	29,171	1.19	10.56
4	현대차	28,710	1.17	8.17
5	POSCO	28,004	1.14	11.19
6	KB금융	23,302	0.95	9.66
7	신한지주	22,658	0.93	9.69
8	현대모비스	22,295	0.91	9.16
9	SK텔레콤	19,424	0.79	9.04
10	LG화학	19,022	0.78	9.26
11	SK	17,694	0.72	9.05
12	한국전력	15,709	0.64	6.00
13	삼성물산	15,686	0.64	5.59
14	KT&G	15,120	0.62	9.41
15	SK이노베이션	13,985	0.57	9.54
16	삼성생명	13,703	0.56	5.86
17	하나금융지주	12,918	0.53	9.64
18	LG디스플레이	12,484	0.51	9.40
19	삼성화재	12,275	0.50	9.20
20	LG	11,518	0.47	8.64
21	우리은행	11,102	0.45	8.90
22	아모레퍼시픽	10,986	0.45	6.18
23	롯데케미칼	10,925	0.45	9.27
24	삼성SDI	10,709	0.44	9.08
25	LG전자	10,585	0.43	8.07
26	기아차	10,559	0.43	6.82
27	엔씨소프트	9,737	0.40	11.70
28	LG생활건강	9,677	0.40	6.23
29	KT	9,349	0.38	10.98
30	삼성전기	9,297	0.38	12.20
...	<중간 생략>			
774	디씨엠	0	0.00	0.01

2) 해외주식

No.	종목명	평가액(억원)	비중(%)	지분율(%)
1	ALPHABET INC	13,854.11	1.42	0.21
2	APPLE INC	11,344.62	1.16	0.13
3	MICROSOFT CORP	11,134.38	1.14	0.18
4	FACEBOOK INC A	8,655.71	0.88	0.21
5	AMAZON.COM INC	8,561.77	0.87	0.16
6	JOHNSON + JOHNSON	6,740.63	0.69	0.17
7	TENCENT HOLDINGS LTD	6,686.83	0.68	0.17
8	ORACLE CORP	6,572.87	0.67	0.28
9	CITIGROUP INC	6,374.59	0.65	0.30
10	JPMORGAN CHASE + CO	6,354.15	0.65	0.17
11	BANK OF AMERICA CORP	6,267.29	0.64	0.23
12	NESTLE SA REG	5,502.16	0.56	0.18
13	ALIBABA GROUP HOLDING SP ADR	5,442.52	0.56	0.13
14	WELLS FARGO + CO	5,329.00	0.54	0.17
15	PFIZER INC	5,032.25	0.51	0.22
16	COMCAST CORP CLASS A	4,933.95	0.50	0.23
17	ROCHE HOLDING AG GENUSSCHEIN	4,601.29	0.47	0.23
18	NOVARTIS AG REG	4,464.68	0.46	0.18
19	EXXON MOBIL CORP	4,429.67	0.45	0.11
20	UNITEDHEALTH GROUP INC	4,424.94	0.45	0.22
21	AIA GROUP LTD	4,127.37	0.42	0.41
22	AT+T INC	4,116.62	0.42	0.16
23	SANOFI	3,903.26	0.40	0.28
24	PHILIP MORRIS INTERNATIONAL	3,789.00	0.39	0.18
25	CISCO SYSTEMS INC	3,741.29	0.38	0.21
26	PROCTER + GAMBLE CO/THE	3,630.71	0.37	0.14
27	MASTERCARDINC A	3,602.76	0.37	0.25
28	TAIWAN SEMICONDUCTOR SP ADR	3,484.53	0.36	0.16
29	MERCK + CO. INC.	3,414.50	0.35	0.17
30	INTEL CORP	3,328.44	0.34	0.18
...	<중간 생략>			
1695	FINISH LINE/THE CL A	48.89	0.01	0.75

3) 국내채권

No.	종목명	평가액(억원)	비중(%)
1	국고채권	1,117,082	39.04
2	한국주택금융공사	214,613	7.50
3	한국은행	162,438	5.68
4	국민주택1종채권	137,480	4.81
5	한국토지주택공사	105,662	3.69
6	한국산업은행	66,712	2.33
7	한국전력공사	50,071	1.75
8	예금보험공사	43,350	1.52
9	농협은행	36,643	1.28
10	우리은행	33,626	1.18
11	한국도로공사	28,593	1.00
12	농협중앙회	25,411	0.89
13	한국가스공사	23,468	0.82
14	한국철도시설공단	20,705	0.72
15	신한카드	20,076	0.70
16	신한금융지주회사	19,543	0.68
17	KB금융지주	18,939	0.66
18	(재)한국장학재단	18,146	0.63
19	한국철도공사	18,087	0.63
20	삼성카드	17,818	0.62
21	하나은행	17,113	0.60
22	SK(주)	15,196	0.53
23	농협금융지주	13,865	0.48
24	하나금융지주	13,829	0.48
25	신한은행	13,629	0.48
26	현대캐피탈	12,793	0.45
27	현대제철	12,706	0.44
2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12,497	0.44
29	(주)케이비국민카드	12,064	0.42
30	한국외환은행	11,702	0.41
...	<중간 생략>		
442	유플러스엘티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유)	1	0.00

4) 해외채권

No.	종목명	평가액(억원)	비중(%)	비고
1	UST 1.329 01/31/19 FRN	1,937.10	0.84	GOVERNMENT BONDS
2	UST 1.625 02/15/26	1,894.85	0.82	GOVERNMENT BONDS
3	JPGV 0.300 09/20/18	1,757.53	0.76	GOVERNMENT BONDS
4	UST 5.000 05/15/37	1,414.14	0.61	GOVERNMENT BONDS
5	GBGV 2.000 09/07/25	1,381.05	0.60	GOVERNMENT BONDS
6	UST 2.000 02/15/25	1,377.44	0.60	GOVERNMENT BONDS
7	BAC 04/30/30 '18 MTN	1,313.89	0.57	CORPORATE BONDS
8	UST 1.250 03/31/21	1,280.42	0.55	GOVERNMENT BONDS
9	UST 2.000 11/15/26	1,258.70	0.54	GOVERNMENT BONDS
10	UST 1.375 01/31/21	1,234.19	0.53	GOVERNMENT BONDS
11	JPGV 0.800 06/20/23	1,204.00	0.52	GOVERNMENT BONDS
12	GBGV 3.250 01/22/44	1,193.17	0.52	GOVERNMENT BONDS
13	JPM 3.875 09/23/20 MTN	1,118.38	0.48	CORPORATE BONDS
14	UST 1.125 08/31/21	1,114.17	0.48	GOVERNMENT BONDS
15	UST 1.875 01/31/22	1,064.32	0.46	GOVERNMENT BONDS
16	UST 2.250 08/15/46	1,026.04	0.44	GOVERNMENT BONDS
17	UST 2.875 11/15/46	1,019.34	0.44	GOVERNMENT BONDS
18	JPGV 1.000 12/20/35	1,007.82	0.44	GOVERNMENT BONDS
19	JPGV 1.700 06/20/32	999.98	0.43	GOVERNMENT BONDS
20	GBGV 3.500 01/22/45	950.66	0.41	GOVERNMENT BONDS
21	UST 1.500 03/31/23	945.90	0.41	GOVERNMENT BONDS
22	JPGV 1.700 06/20/33	914.19	0.40	GOVERNMENT BONDS
23	JPGV 09/25/17 MATd	866.32	0.37	TREASURY BILLS
24	JPGV 09/19/17 MATd	865.27	0.37	TREASURY BILLS
25	DEGV 4.250 07/04/39	848.63	0.37	GOVERNMENT BONDS
26	JPGV 0.200 03/20/19	847.15	0.37	GOVERNMENT BONDS
27	JPGV 1.100 06/20/21	822.83	0.36	GOVERNMENT BONDS
28	GBGV 4.250 06/07/32	818.72	0.35	GOVERNMENT BONDS
29	UST 1.750 09/30/22	765.06	0.33	GOVERNMENT BONDS
30	JPGV 08/28/17 MATd	760.69	0.33	TREASURY BILLS
...	<중간 생략>			
4270	FNCL 694463 4.500 03/01/33	0.00	0.00	MORTGAGE BACKED SECURITIES

붙임 6 **대체투자 통계치 예시**

<국내대체>

1. 국내대체 포트폴리오 현황 총괄

□ 국내대체 투자금액

(단위: 억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동산		61,009	27.5	57,013	25.5	59,366	27.0
인프라		88,081	39.7	83,959	37.6	83,086	37.9
기타 대체	벤처투자	7,851	3.5	9,360	4.2	8,999	4.1
	사모투자	64,164	28.9	72,342	32.4	67,546	30.8
	구조조정투자	808	0.4	742	0.3	478	0.2
총 계		221,913	100.0	223,417	100.0	219,475	100.0

□ 국내대체 포트폴리오 구성

(단위: 건,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부동산	인프라	기타사모	국내대체	부동산	인프라	기타사모	국내대체
펀드 수[1]		42	154	116	312	44	154	125	323
약정금액[2]		57,787	92,588	165,555	315,930	62,382	92,065	157,058	311,505
투자잔액[3]		53,848	83,806	78,174	215,828	55,552	82,335	76,661	214,498
투자 유형[4]	프로젝트	52,409	80,899	41,007	174,315	54,511	79,203	39,644	173,358
	펀드	1,439	2,907	37,167	41,513	1,041	3,132	36,967	41,140

주1) 개별 종목 기준으로 펀드 수는 위탁펀드와 프로젝트(블라인드 포함)의 합임
2) 2016년 말 기준 청산 완료 펀드 및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펀드 약정액은 제외
3) 100% 감액한 용산 개발 펀드 2건 제외
4) 투자잔액 기준임

□ 국내대체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2016년)

(단위: 억 원, %)

구분	위탁금액	비중
부동산	53,758	90.6
인프라	19,181	23.1
기타대체	75,107	97.5
총 계	148,047	67.5

2. 국내대체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 국내부동산 약정 및 투자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5년 말		2016년 말	
	약정	투자 잔액	약정	투자 잔액
지분형	49,269	46,776	52,566	47,880
대출형	6,819	6,667	5,795	5,614
혼합형	1,700	1,700	5,421	3,343
총 계	57,788	55,143	63,782	56,836

□ 국내인프라 투자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5년				2016년			
		약정	투자	투자잔액		약정	투자	투자잔액	
		금액	집행액	금액	비중	금액	집행액	금액	비중
직접투자	BTO사업	47,705	0	46,079	55.0	48,105	0	45,916	55.8
	BTL사업	18,924	222	16,398	19.6	18,776	84	15,842	19.2
	발전・유틸리티	1,821	452	1,446	1.7	1,821	127	1,513	1.8
	운송・터미널	1,300	8	974	1.2	300	109	117	0.1
	자원・에너지	-	-	-	-	-	-	-	-
	소계	67,950	682	64,896	77.4	69,002	320	63,388	77.0
위탁투자	BTO사업	2,169	28	1,860	2.2	2,569	128	1,986	2.4
	BTL사업	465	11	424	0.5	465	12	417	0.5
	발전・유틸리티	4,484	1,128	1,072	1.3	4,484	73	1,258	1.5
	운송・터미널	7,237	3,025	7,144	8.5	7,077	-	6,834	8.3
	자원・에너지	11,813	18	8,439	10.1	8,466	12	8,450	10.3
	소계	26,168	4,211	18,910	22.6	23,061	347	18,945	23.0
합계	BTO사업	49,874	28	47,939	57.2	50,673	128	47,902	58.2
	BTL사업	19,389	234	16,822	20.1	19,241	97	16,258	19.7
	발전・유틸리티	6,305	1,580	2,518	3.0	6,305	323	2,771	3.4
	운송・터미널	8,537	3,033	8,088	9.7	7,377	109	6,952	8.4
	자원・에너지	11,813	18	8,439	10.1	8,466	12	8,450	10.3
	소계	94,118	4,893	83,806	100.0	92,063	667	82,334	100.0

□ 기타대체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5년말		2016년 약정/투자		'16년말	
	약정	투자잔액	신규약정	투자집행	약정	투자잔액
벤처	5,675	3,366	1,870	966	7,545	3,594
CRC	2,480	1,442	0	0	1,480	1,231
PEF	62,520	43,241	13,055	4,823	70,675	42,140
NPL	12,000	2,607	0	1,145	12,000	2,844
메자닌	9,770	2,565	0	556	7,770	1,769
Growth	14,400	6,586	2,000	2,231	16,400	7,243
COPA	49,800	7,190	0	2,271	33,343	8,329
팬아시아	8,960	6,459	0	13	8,960	5,577
인수금융	4,750	4,719	0	0	3,900	3,885
합계	**170,355**	**78,174**	**16,925**	**12,004**	**162,073**	**76,611**

<해외대체>

1. 해외대체 포트폴리오 현황 총괄

□ 해외대체 투자금액

(단위: 억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동산	121,740	49.8	154,835	47.9	190,603	45.7
인프라	49,348	20.2	77,010	23.8	103,201	24.7
사모	73,548	30.1	91,339	28.3	114,100	27.3
헤지펀드	-	-	-	-	9,307	2.2
총 계	244,636	100.0	323,184	100.0	417,211	100.0

□ 해외대체 포트폴리오 구성

(단위: 건, 백만 달러)

		2015년				2016년 3분기			
		부동산	인프라	사모	해외대체	부동산	인프라	사모	해외대체
펀드 수[1]		95	42	89	226	117	57	109	283
약정금액		19,405	8,678	15,188	43,271	24,824	12,068	19,634	56,526
집행금액		13,982	5,495	8,677	28,154	18,294	6,953	11,104	36,351
투자잔액		10,936	4,978	6,256	22,170	14,082	5,980	7,910	27,972
투자 유형[2]	프로젝트	4,482	2,850	626	7,958	6,020	3,055	1,214	10,289
	펀드	6,454	2,128	5,630	14,212	8,062	2,925	6,697	17,684
NAV[3]		12,473	6,150	7,299	25,922	16,123	7,700	9,084	32,907
NAV+잔여약정금액[4]		18,763	9,639	14,550	42,952	23,797	13,460	18,395	55,652

주1) 개별 종목 기준으로 펀드 수는 위탁펀드와 프로젝트(블라인드 포함)의 합임

2) 투자잔액 기준

3, 4)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 기준

□ 해외대체 지역별 투자현황(2016.3분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부동산		인프라		사모		해외대체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4,773	20.1	1,763	13.1	1,635	8.5	8,170	14.5
유럽지역	4,491	18.9	1,910	14.2	2,638	13.8	9,039	16.0
북미	11,137	46.8	3,229	24.0	5,878	30.7	20,244	35.9
남미	83	0.3	146	1.1	-	-	229	0.4
글로벌투자	3,313	13.9	6,412	47.6	8,979	46.9	18,703	33.2
전체	23,796	100.0	13,461	100.0	19,130	100.0	56,387	100.0

주)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의 2016년도 9월말 NAV+잔여약정금액 기준임

□ 해외대체 통화별 투자현황(2016.3분기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부동산		인프라		사모		해외대체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USD)	16,928	71.1	9,837	73.1	16,149	84.4	42,914	76.1
유로(EUR)	3,735	15.7	1,357	10.1	2,867	15.0	7,958	14.1
호주(AUD)	1,101	4.6	1,400	10.4	-	-	2,502	4.4
영국(GBP)	618	2.6	419	3.1	-	-	1,037	1.8
일본(JPY)	727	3.1	-	-	115	0.6	841	1.5
기타	687	2.9	449	3.3	-	-	1,135	2.0
전체	23,796	100.0	13,461	100.0	19,130	100.0	56,387	100.0

주)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의 2016년도 9월말 NAV+잔여약정금액 기준임

□ 해외대체 위탁운용 금액 및 비중(2016년)

(단위: 억 원, %)

구분	위탁금액	비중
부동산	190,603	100.0
인프라	103,201	100.0
기타대체	114,100	100.0
헤지펀드	9,307	100.0
소계	417,211	100.0

2. 해외대체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 해외부동산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3분기 기준			2016년 3분기 기준		
	전체	프로젝트	펀드	전체	프로젝트	펀드
투자자산	95개	27개	68개	117개	33개	84개
약정금액	19,405	6,444	12,960	24,824	8,075	16,749
집행금액	13,982	5,980	8,002	18,294	7,645	10,649

□ 해외부동산 전략별 투자현황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3분기		
	프로젝트	펀드	해외부동산	프로젝트	펀드	해외부동산
Core	58	5	23	68	1	23
Core plus	-	41	27	-	47	31
Value-added	42	26	31	28	25	26
Opportunistic	-	28	19	4	27	19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주)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의 2016년도 9월말 NAV+잔여약정금액 기준임

□ 해외부동산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프로젝트		단독펀드		합동펀드		해외부동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2,017	26.0	1,622	20.9	1,080	13.4	4,773	20.1
유럽지역	2,210	27.7	889	11.5	1,391	17.3	4,491	18.9
북미	3,698	46.3	3,717	47.9	3,722	46.2	11,137	46.8
남미	-	-	-	-	83	1.0	83	0.3
글로벌투자	-	-	1,538	19.8	1,774	22.0	3,313	13.9
전체	7,979	100.0	7,766	100.0	8,051	100.0	23,796	100.0

주)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의 2016년도 9월말 NAV+잔여약정금액 기준임

□ 해외인프라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3분기 기준			2016년 3분기 기준		
	전체	프로젝트	펀드	전체	프로젝트	펀드
투자자산	42개	12개	30개	57개	15개	42개
약정금액	8,678	3,270	5,408	12,068	4,116	7,952
집행금액	5,495	3,002	2,493	6,953	3,313	3,640

□ 해외인프라 전략별 투자현황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3분기		
	프로젝트	펀드	해외인프라	프로젝트	펀드	해외인프라
Diversified	3	62	37	2	72	44
Energy	14	38	27	11	28	21
Midstream	55	-	24	47	-	19
Shipping	-	-	-	6	-	2
Telecom	6	-	3	5	-	2
Transportation	22	-	9	29	-	12
General	-	-	-	-	-	-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주)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의 2016년도 9월말 NAV+잔여약정금액 기준임

□ 해외인프라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프로젝트		단독펀드		합동펀드		해외인프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985	18.2	-	-	778	12.4	1,763	13.1
유럽지역	858	15.8	-	-	1,053	16.7	1,910	14.2
북미	2,319	42.7	-	-	910	14.5	3,229	24.0
남미	-	-	-	-	146	2.3	146	1.1
글로벌투자	1,264	23.3	1,741	100.0	3,407	54.1	6,412	47.6
전체	5,426	100.0	1,741	100.0	6,293	100.0	13,461	100.0

주)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의 2016년도 9월말 NAV+잔여약정금액 기준임

□ 해외사모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3분기 기준			2016년 3분기 기준		
	전체	프로젝트	펀드	전체	프로젝트	펀드
투자자산	89개	11개	78개	109개	11개	98개
약정금액	15,188	2,007	13,181	19,634	2,165	17,469
집행금액	5,677	1,235	7,442	11,104	1,404	9,700

□ 해외사모 전략별 투자현황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3분기		
	프로젝트	펀드	해외사모	프로젝트	펀드	해외사모
Core	-	-	-	-	6	5
Credit/Mezz	52	17	22	59	16	20
Distressed	-	11	9	-	9	9
대형 Buyout	30	37	36	41	35	36
Secondary	-	11	10	-	9	8
중소형 Buyout	-	24	21	-	24	21
VC	-	-	-	-	1	1
기타	18	-	2	-	-	-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주)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의 2016년도 9월말 NAV+잔여약정금액 기준임

□ 해외사모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프로젝트		단독펀드		합동펀드		해외사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227	12.7	266	6.2	1,142	8.8	1,635	8.5
유럽지역	74	4.1	340	7.9	2,224	17.1	2,638	13.8
북미	871	48.7	1,404	32.5	3,603	27.7	5,878	30.7
남미	-	-	-	-	-	-	-	-
글로벌투자	616	34.5	2,305	53.4	6,057	46.5	8,979	46.9
전체	1,788	100.0	4,316	100.0	13,026	100.0	19,130	100.0

주)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자문사인 Grosvenor 제공 데이터의 2016년도 9월말 NAV+잔여약정금액 기준임

□ 헤지펀드 투자전략별 비중

(단위: %)

구분	재간접펀드 운용사 A	재간접펀드 운용사 B	헤지펀드 전체
Equity Hedge	33.6	15.2	26.6
Event Driven	21.8	39.0	28.4
Macro	20.2	14.7	18.1
Relative Value	14.9	12.8	14.0
Multi&Others	9.6	18.4	13.0

주) 2016년말 기준

□ 헤지펀드 운용사별 투자현황

(단위: %, 비율)

구분	재간접펀드 운용사 A (3억 7,065만 달러)		구분	재간접펀드 운용사 B (2억 3,740만 달러)	
	비중	NAV/투자잔액		비중	NAV/투자잔액
펀드 A	4.1	1.00	펀드 1	1.9	1.00
펀드 B	5.8	1.01	펀드 2	1.4	1.00
펀드 C	4.1	1.02	펀드 3	1.6	1.00
펀드 D	4.1	1.01	펀드 4	3.1	1.03
펀드 E	4.9	0.99	펀드 5	2.7	1.01
펀드 F	4.9	1.00	펀드 6	4.5	1.01
펀드 G	4.1	1.01	펀드 7	3.1	1.01
펀드 H	1.8	1.01	펀드 8	4.1	1.00
펀드 I	1.5	1.02	펀드 9	4.5	1.01
펀드 J	4.1	1.00	펀드 10	2.3	1.00
펀드 K	4.1	1.01	펀드 11	1.6	0.97
펀드 L	4.9	1.00	펀드 12	2.1	1.02
펀드 M	4.1	1.02	펀드 13	2.7	1.00
펀드 N	4.1	0.98	펀드 14	3.5	1.01
펀드 O	4.1	0.98			
전체	61.0	-	전체	39.0	-

주) 2016년말 투자잔액 기준의 비중임

<별지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안)

2018. 4. 2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104조에 따라 운용위원회에 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2조(운용위원회의 기능) 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2. 전략적 자산배분
3.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및 의결권행사지침
5. 위탁운용비중 결정
6.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7.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
8. 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결정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14명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궐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운용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금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운용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② 의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 또는 위원 명패를 세우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1.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 이전에 긴급하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10조(회의록의 공개·작성·비치) ①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과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각 위원들은 회의록과 의사록에 대하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회의록 공개의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의사록은 제4항에 따라 차기 회의에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사임 등에 따른 위원 해촉 등의 경우,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만료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원장이 해촉을 통보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위촉자격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추천 단체·기관에서 해촉을 요청한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 해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용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의결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윤리강령을 정하고, 모든 위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나 자료를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대리출석)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용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차하위직급에 있는 자를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5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기금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6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위원 14명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실무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궐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실무평가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 제9조제4항은 제외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제12조제2항의 운용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실무평가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20조의2(서면심의) ① 제8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제5호의 사유로 서면심의를 하려면 서면심의 여부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 이전에 긴급하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4.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5.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전문위원회

제21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2.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3.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의 평가, 성과보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② 운용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 외에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

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 등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법률,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1조의2(회의록 작성·비치) ①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준용규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제12조제2항의 운용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4조(안건) 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용위원회 : 의결안건, 보고안건
2. 실무평가위원회 : 심의안건, 보고안건

3. 전문위원회 : 심의안건, 보고안건

제25조(안건의 공개) ① 위원회 등의 안건은 공개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운용위원회가 안건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자료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업무 설명 및 교육 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등은 안건의 검토·심의·평가·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회의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회의참석수당, 안건심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11.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운용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8일에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윤리강령'으로 본다.

② 운용위원회에서 2006년 3월 30일에 의결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제22조에 의한 운영세칙으로 본다.

③ 운용위원회에서 2008년 2월 21일에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제22조에 의한 운영세칙으로 본다.

부칙(2013.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차 운용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2018. 4. 2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개요) ①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서 현행 국민연금관련 법령과 내용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③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거래기관 등 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이하 “기금운용관련자”라 한다)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관련법령 등의 허용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조(지침의 목적) ① 이 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에 적합한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며, 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과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한다.

② 이 지침은 운용목표, 투자정책, 윤리강령 및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관리자, 위탁투자 관계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

③ 이 지침은 기금운용지배구조 등 내부적 운용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기금운용의 일관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④ 이 지침은 국민연금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운용의 관리책임을 완수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3조(기금운용 목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다음 각 호의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을 설치한다.(법 제101조제1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법 제102조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급여를 보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금운용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다.

1.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유동성의 원칙 :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5. 운용 독립성의 원칙 :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2.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3.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4. 기금운용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5.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및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6. 위탁운용 목표범위 결정
7.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8.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 심의
9.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평가한다.

1. 기금운용성과의 측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자산 구성과 기금의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주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관련 법률안 기안
2. 전략적 자산배분안 작성
3.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작성
4.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작성
5. 기금운용 성과평가(외부평가)
6. 기금운용체계 개선
7. 기금운용 모니터링
8. 기금운용위원회 의안 상정 및 위원회 운영
9. 공단의 기금운용규정,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 지도감독

④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한다.

1. 중장기 또는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주식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1.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2. 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4.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5.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6. 배당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운용본부 전체 및 기금운용본부장의 성과급 지급률과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기준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 내·외부 성과평가보고서 검토
2.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3. 보상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4.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의 관리·운용을 수행한다.

1. 전략적 자산배분 등 주요 기금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제언
2. 전술적 자산배분
3. 투자의사결정과 이를 위한 연구 및 사후관리
4.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

5. 기금운용규정 작성, 연간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6.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관리
7. 기금운용 성과평가(내부평가)
8. 기금운용 현황의 보고와 공시
9. 기금운용의 감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기금운용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장 투자정책

제6조(목표수익률) ① 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조정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조정치는 목표수익률이 위험한도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치의 수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위험한도) ①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향후 5년 동안의 누적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Shortfall Risk)을 1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5년 후 최저적립금 비율(5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적립금 규모 중 하위 5%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적립금의 기댓값으로 나눈 비율), 연간손실확률(연간 운용수익률이 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극단손실(expected tail loss)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8조(전략적 자산배분) ①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하여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시하되, 재정추계에서 적용한 예상수익률,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연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의 공공부문에의 투자한도를 정하며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국채의 매입에 의한다.

제9조(복지사업) ①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② 기금의 복지사업 대여이자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준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신규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인 해당기간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5년인 경우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이 되어야 함)

제10조(목표 초과수익률) ① 공단은 액티브운용을 통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이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위험을 포함한 총 위험을 고려하여 대체투자를 제외한 금융부문 전체의 목표 액티브위험(Active Risk, 실제 운용이 벤치마크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초과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함)과 목표 IR(Information Ratio, 초과수익률을 액티브위험으로 나눈 값으로 액티브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을 정함으로써 목표 초과수익률(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의 목표치로서 목표액티브위험 × 목표 IR로 계산됨)을 결정한다.

③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액티브 운용의 효율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 액티브위험을 목표 초과수익률이 적용되는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자산군별로 배분하고 그 배분 결과를 목표 초과수익률이 적용되는 연도에 최초로 개최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전술적 자산배분) ① 전술적 자산배분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범

위 안에서 조정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초한 각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변동폭 이내에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며,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 경제 상황의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자산군별 비중이 투자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전술적 자산배분을 할 때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환익스포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산군 분류) ① 자산군을 분류하는 목적은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군을 다변화 하는데 있으므로 기금은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③ 기금의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제13조(외환관리 정책) ① 외환관리 정책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익스포저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② 외환관리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2.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수익률 제고
3. 대규모 환 손실로부터 기금 보호

③ 해외투자 및 외화단기자금에 의한 외환익스포저는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USD) 이외 통화로 표시된 해외채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해 100%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p 범위에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공단은 환율변동 시 수익률 방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외환익스포저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외환익스포저

규모를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 외환익스포저가 특정 통화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략적 통화구성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해외주식·해외채권은 벤치마크의 통화구성을 추종하고 해외대체투자는 통화블록별 범위를 구성하여 관리한다.

제14조(벤치마크지수) ① 벤치마크지수의 설정은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③ 자산군별 세부 벤치마크지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수 외에 기금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별도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벤치마크지수는 기금의 자산운용의 방향성 및 원칙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⑤ 벤치마크지수는 매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용) ① 기금의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되, 자산별 위탁운용 목표범위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한다.

③ 공단은 위탁운용현황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위탁운용사에게 운용사간 객관적인 성과비교가 가능토록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점진적 도입을 유도하여 향후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에 활용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공단은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

으로 확인, 평가하여 해당 운용사에 위탁운용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제16조(자산별 세부투자지침) 자산별 세부투자지침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제3장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

제17조(책임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결권 행사) ① 기금의 보유 주식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

② 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의결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른다.

⑤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한 안건이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안건은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매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8조(위험의 인식 및 측정) ① 위험의 인식범위는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금운용의 제반 업무활동 및 자산의 운용 등이며, 인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1. 시장위험 :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위험으로서 통계적으로 산출한 값인 Value at Risk(VaR)로 측정할 수 있다.
2. 신용위험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으로서 노출금액(Exposure), 예상손실(Expected Loss), 비예상손실(Credit VaR)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3. 유동성위험 :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4. 법규위험 : 법 해석 또는 계약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기금이 보게 될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5. 운영위험 :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을 보이거나 기금의 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말한다.

② 인식된 위험이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해당 위험량은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의 관리) ① 공단은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공단 내에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리스크관리센터를 두며, 리스크관리센터장은 기금운용의 중요 위험관리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고한다.

④ 공단은 전략적 자산배분 및 액티브 위험 배분을 바탕으로 연단위로 총위험한도와 자산종류별 위험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실제 기금의 위험을 점검하여 설정된 위험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와 설정된 위험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위기(기금이 투자한 자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회수가 어려운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말한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위기 상황이 발전·심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20조(내부통제) ①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준법감시인을 둔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의 수립 및 관리
2.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보고
3. 기금운용 관련 준법교육
4. 그 밖에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를 위해 이사장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업무

제5장 성과평가 및 보상

제21조(성과평가) ① 운용성과의 평가는 기금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운용성과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벤치마크와의 정량적 비교 평가 뿐 아니라 운용체계와 리스크 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③ 국민연금연구원 및 외부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는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을 준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 전체에 대해서는 금액가중수익률을 병기한다. 다만, 자산의 투자조건 등 상황에 따라 장부가수익률 등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익률을 산정할 경우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포함한

총수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제22조(보상정책) ① 보상정책은 성과평가와 보상을 연계하여 보상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경쟁적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보상정책으로 우수인력을 유치 및 유지하여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상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에서 정하며,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기금운용관련자의 윤리기준) ① 윤리기준은 기금운용에 관련된 자가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련자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건복지부, 공단, 심의·의결·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 등 기구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거래기관 등을 포함한다.

③ 기금운용관련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Fiduciaries)로서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진다. 따라서 기금운용관련자들은 오직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전문적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윤리기준의 세부사항은 '이 지침의 부속서인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고 및 감사) ① 공단은 기금의 운용자산 및 위험관리 현황, 운용성과, 의결권 행사기준 및 내역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공단의 감사는 매반기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또는 월간 자금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여부
4. 그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이 기금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업무설명 및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 ①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금운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별표 4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 종목 등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6개월 이전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단은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금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인쇄물, 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대외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침의 검토 및 개정)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15.6.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 개정사항은 2015년 국고채 최초 선매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주식 의결권 행사”를 “주식 의결권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배당에 관한 의결권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연금재정팀장”을 “국민연금재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6.4.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채권 환헤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채권의 미국 달러화(USD)와 원화(KRW) 간 전략적 환헤지비율 목표는 2017년말 50%, 2018년말 0%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부 칙(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제11조제2항 관련)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1)]	±2.0	±3.5	±1.5	±0.5	±1.2
전술적 자산배분(TAA) 허용범위	±3.0	±5.0	±2.0	±2.0	+1.2/-2.2
총 허용범위	±5.0	±8.5	±3.5	±2.5	+2.4/-3.4

1) SAA비중이 SAA 허용범위 내에 있으면 목표비중으로 간주하고, SAA비중이 SAA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리밸런싱)

[별표 2]

벤치마크지수(제14조제2항 관련)

1.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벤치마크지수
국내주식	KOSPI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
국내채권	Customized Index
해외채권	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ex Korea, hedged-to-KRW)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 (목표비중 설정방식 마련 전까지는 실제비중 사용)

※ 성과평가시는 총수익지수(Total Return Index) 방식을 적용

2. 제1호 중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Customized Index)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편입할 개별 종목들의 모집단(Universe)을 정하고, 이 모집단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하는 모집단 기준지수(Universe-based Index)방식에 따른다.

-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Customized Index) 편입대상

항 목	편입대상 조건
발행시 만기	1.5년 이상
투자대상등급	BBB+ 이상[1)]
발행잔액	300억원 이상
제외 대상	주식관련채권, 사모사채, 주가연계채권(ELN), 파생연계채권(DLS), 변동금리부채권(FRN), 후순위채[2)], 후후순위채, 옵션부채권[3)]

1)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편입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분기말에 일괄적으로 유니버스에서 제외

2)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유니버스에 편입(단, 하이브리드 증권은 후후순위채이므로 제외)

3) 옵션부채권 중 Call, Put 또는 Call/Put 옵션부 은행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은 유니버스에 편입

4) 각 종목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유니버스에 편입(단, 국고채 선매출의 경우 대금납입일부터 유니버스에 편입)

3. 제1호 중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는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익률 목표’와 ‘성과평가’의 두 가지 벤치마크로 구분한다.

가. 장기수익률 목표 벤치마크

세부자산군	벤치마크(장기수익률 목표, 10년)
국내 PE	(국내주식 벤치마크 + 2.5%)×0.6 +(국내채권 벤치마크 + 1.5%)×0.4
해외 PE	해외주식 벤치마크 + 3.0%
국내부동산	국내 CPI 상승률 + 5.0%
해외부동산	해외 CPI 상승률 + 5.0%
국내 인프라	국내 CPI 상승률 + 4.0%
해외 인프라	해외 CPI 상승률 + 5.0%
헤지펀드	미국단기금리(T-bills 90일물) + 4.5%

나. 성과평가 벤치마크

세부자산군	벤치마크지수
국내 PE	(KOSPI 3년 연평균 수익률+ 2.5%)×w1[1)] + (국내채권 BM 3년 연평균 YTM + 1.5%)×(1 - w1)
해외 PE	동종유형 비교 지수(Peer Group Index) 수익률(IRR)
국내부동산	IPD 한국지수 × w2[2)] + [국내CPI 상승률(실제치) + 5%] × (1 - w2)
해외부동산	주요 투자대상 7개국 IPD Country Index 가중평균 지수
국내 SOC	[국내 CPI 상승률(실제치) + 4%] × w3[3)] + [기존 투자자산 실제수익률 × (1 - w3)]
해외 인프라	「OECD CPI 상승률(실제치) + 5%」의 원화헤지 기준 수익률
헤지펀드	HFRI FoFs × 0.5 + [미국단기금리(T-bills 90일물) + 4.5%] × 0.5

1) w1 : 국내 사모 지분형 투자의 당해 연도 비중
2) w2 : 적용시점 최초 50% 설정 후 연도마다 10%p 씩 증가(2018년부터 IPD한국지수만 사용)
3) w3 : 벤치마크 적용시점부터 신규 약정하는 투자 자산의 해당 자산군내 실제비중

[별표 3]

자산별 세부투자지침(제16조 관련)

1. 국내주식

① 국내주식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된 위험한도 안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내주식의 내부운용은 사전에 투자가능종목군을 구성하고, 투자가능종목군에 포함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며,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운용(Passive Management)을 지향한다.

③ 국내주식의 위탁운용은 민간 기관의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투자 스타일을 다양화하며, 액티브 운용(Active Management)을 지향한다.

2. 국내채권

① 채권운용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만기 보유와 채권종류별, 발행기관별, 계열별(회사채) 및 만기구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일정범위 안에서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채권의 발행기관별, 계열별 총신용위험노출액(Total Credit Exposure)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3. 해외투자

① 해외투자의 목적은 국내투자를 보완하여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분산투자 효과로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② 해외투자시 외국의 우수 운용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기법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③ 장기적으로 기금성숙기에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분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여 향후 급여지급을 위한 자산의 현금화시 국내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④ 공단은 외환익스포져 관리현황을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4. 대체투자

① 대체투자의 목적은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상이한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② 대체투자는 부동산, 인프라, 벤처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투자, 사모투자, 헤지펀드, 자원개발 등을 말한다.

③ 대체투자는 약정시점에서 일정기간 분산하여 집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약정한도를 부여한다.

④ 대체투자부문 투자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단 투자위원회와는 별도의 투자의사결정기구(“대체투자위원회“)를 둔다.

⑤ 대체투자는 세부투자계획 수립,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조언을 참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공단은 새로운 투자처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단기자금

① 단기자금이란 연금급여 지급 또는 중장기 자산 투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② 원화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운용기간 3개월 이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

③ 외화단기자금은 안정적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운용하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일평잔 미화 3억불 한도내에서 운용한다.

6. 대여거래

① 유가증권 대여거래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별표 4]

공시 대상 정보(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공시 대상
월간공시	▪ 조성·지출·적립 현황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
분기공시	▪ 주식 대량보유 내역 ▪ 채권 종류별 운용 현황 ▪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연간공시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세부 내역 - 주식 섹터별 운용 현황 - 대체투자 세부유형별 운용 현황 - 해외투자 지역별 운용 현황 - 증권위탁 펀드별 운용 현황 ▪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 **국내 · 해외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 - **국내채권 발행기관별 투자 현황** - **해외채권 종목별 투자 현황** - 대체투자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별 투자 현황 및 **대체투자 관련 통계치** ▪ 책임투자 관련 현황 - 책임투자를 위한 정책, 계획, 조직 및 활동내역 -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준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범위(위탁·직접 구분) 및 운용규모 -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 현황(공시대상 '자산군별 투자종목 세부 내역' 중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종목별 현황) - 책임투자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및 현황, 성과평가 기준
수시공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 ▪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규정과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